

부산광역시사하구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위원은 재난방재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임원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주무담당이 된다

라. 위원의 임기(안 제5조)

-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해 연임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마. 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바. 의견의 청취(안 제8조)

-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 건은

- 지난 2005년 1월 27일부로 일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이 법률 제7359호에 의거 공포됨에 따라 각종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있게 통계관리하고 예측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 인명의 피해정도를 완벽하게 식별 관리하여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인한 혼선방지와 피해자 관리·복구계획수립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와 예산절감 사회안전망구축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됨
- 그리고 부산진구 등 13개구에서 조례가 제정완료 내지 입법 예고 중에 있고, 남구·동구에서는 조례심의 중에 있음
-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에 조례제정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지만 2004. 7. 26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지침을 비롯하여 2005. 6. 26자 부산광역시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관리지침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입법이 가능하므로

위 조례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